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86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김남근·허종식·김용만

이기헌 · 이훈기 · 오세희

임미애 · 황정아 · 허성무

김우영 • 정진욱 • 박희승

강준현 · 민형배 · 박홍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등을 수수(收受)하고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만 함)」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나 제9조의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해석의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선물등의 수수행위로 인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다목과「공직자 윤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하여 청탁 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자 함.

또한, 최근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 실을 알면서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관 하여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 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 금품등 수 수 과정에서의 직무관련성 사실관계, 제20조의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절차 담당자와 담당자가 제9조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 신고사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 •조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종결처리를 하여. 공직자등의 청 탁금지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제12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더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 법")」 제19조의 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을 의결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최종 의결서에는 반대의 견이 기재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건 종결 처분에 대한 불 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등 신고사건 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처

리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종결처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에는 의결서에 찬·반의 의견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며, 신고인이 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위반 신고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리상 종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기초적인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공직자의 공직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제1항의 고가의 금품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 2, 제22조제4항 신설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신고에 관한 특례)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등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다목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첩 이유서 작성의무)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건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을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이첩하지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에 따른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에 이와 관련한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의 불이첩 이유서와 제2항의 의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한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제14조의2의 고위공직자등의 배우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등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본문 중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대통령 등이 외국인에
	게 받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신고에 관한 특례) 대통령 또
	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
	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
	등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
	법」 제15조제1항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의2다목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한다.
<u><신 설></u>	제14조의2(국민권익위원회의 불
	이첩 이유서 작성의무) ① 국
	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건 중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을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
	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
	인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이첩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제22조(벌칙) ① ~ ③ (생 략)

<u><신</u>설>

한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에 따른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의결서에 이와 관련한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 항의 불이첩 이유서와 제2항의 의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 제22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제14조의2의 고위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④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한다.
- 1. (생략)
-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 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에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5
1 /귀긔기 기 ()
1. (현행과 같음)
2

경우는 제외한다.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 <u>함한다)</u>. 다만, 공직자등 또 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 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한다.

- 3. (생략)
- ⑥·⑦ (생 략)

<u>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u>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
함한다) 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청해고 가우)

- 3. (현행과 같음)
- ⑥·⑦ (현행과 같음)